



감정평가서 전자서명(원본) 증명서

《기본 정보》

감정서번호	2026-01-006
평가금액	3,333,186 원
평가기관 / 평가자	문성감정평가사사무소 / 이영기
서명해쉬 페이지수	총 22 페이지

《서명자 정보》

구분	소속 / 성명	서명해쉬(일부)	서명시간
담당평가사	문성감정평가사사무소 / 이영기	eyJhbGciOiJFUzI1Nils	2026-02-04 20:03:00.0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원본 감정평가서임을 확인합니다.

본 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의거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생성된 원본 감정평가서로,
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며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본 문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945 소재 부동산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2025-16654-A01)

감정평가서번호: 2026-01-006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성감정평가사사무소

(부동산) 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이영기

감정평가액	삼백삼십삼만삼천일백팔십육원정(₩3,333,186.-)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감정평가목적	구매	
채무자	-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소유자 (대상업체명)	하혜자 (2025-16654-A01)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 건	-	
목 록 표 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2026.01.28	2026.01.28	2026.02.02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109 643x----- 2,334	토지	30.0287	-	3,333,186
		이	하	여	백	
	합 계					₩3,333,18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표지 참 조 II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945	답	자연녹지지역	109 643x----- 2,334	30.0287	111,000	3,333,186	지분
합 계								₩3,333,186.-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이건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소재 '아랫산두굴'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의뢰된 구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건입니다.

2. 대상물건 개요

기호	소재지 (창원시)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접면	형상 지세	25년 개별지가 (원/㎡)	비고
1	의창구 북면 마산리 945	30.0287	답	과수원	자연녹지	맹지	부정형 완경사	72,600	지분 (643x 109/2334)

3. 실지조사 및 기준시점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사항의 확정)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6년 01월 28일로 하였습니다.

나. 실지조사 및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6년 01월 28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습니다.

5. 감정평가방법

가. 감정평가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및 감정평가 제이론에 의거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나.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감정평가한 시산가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중 감정평가 목적,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비교법(비교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 간 합리성을 검토하여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그 밖의 사항 :

- 1) 평가대상토지는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건으로서, 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 2)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수목이 소재하며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3) 평가대상토지 남동측 경계부분에 전신주가 소재하나,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토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속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이 비교 가능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되, 기준시점 현재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26.01.0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습니다.

(공시기준일 : 2026. 01. 01)

기호	소재지 (창원시)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접면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의창구 북면 마산리 948	1,421	답	답	자연녹지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73,3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 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하였습니다.(미고시기간은 전월연장적용)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녹지지역

기 간	변동률 (%)	비 고
누 계 (2026.01.01 ~ 2026.01.28)	0.068% (1.00068)	2025.12.01 ~ 2025.12.31 : 0.075 (1 + 0.00075 * 28/31) ≒ 1.00068

※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 지역요인

평가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개별요인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통풍, 토양·토질의 양부, 관개·배수의 양부
획지조건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기호	비교 표준지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	A	0.95	1.00	1.00	1.00	0.85	0.808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농로의 상태 등), 기타조건(제시외수목 소재)에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 2003다 38207판결 (2004.05.14. 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토정30241-36538,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의 평가사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합니다.

2)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방법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사례시점의 표준지 단가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text{기준시점의 표준지 단가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2) 인근 감정평가사례

[자료출처:감정평가정보센터]

기호	소재지 (창원시)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감정평가목적 기준시점
#1	의창구 북면 월백리 ***	314	답	자연녹지 (답)	152,000	47,728,000	경매 2024.10.07
#2	의창구 북면 마산리 *****	1	답	자연녹지 (답)	115,000	115,000	경매 2020.05.2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격차율 산정

① 표준지 기호(A)와 평가사례 기호 (#1)과 비교

기호	구분	기준단가(원/㎡)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산출단가 (원/㎡)	격차율
		공시지가(원/㎡)					
1	평가사례(#1)	152,000	1.00682	1.000	0.900	137,733	1.878
	비교표준지(A)	73,300	1.00068	1.000	1.000	73,350	
시점수정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녹지지역 2024.10.07 ~ 2026.01.28					1.00682
지역요인 비교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					1.000
개별요인 비교	접근		자연	획지	행정	기타	누계
	0.90		1.00	1.00	1.00	1.00	0.900
	비교표준지는 접근조건(농로의 상태에서 우세하나, 취락과의 접근성에서 열세)에서 열세합니다.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결정의견	상기 비교사례를 종합분석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 거래동향, 거래사례, 평가전례, 공시지가의 현실화정도, 지역의 개발정도 및 주위환경의 변화, 기타 지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가장 현실성 및 타당성이 있는 가격에 접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기호 A : 1.87

3. 토지단가의 산정

기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기호	공시지가 (원/㎡)						
1	A	73,300	1.00068	1.000	0.808	1.87	110,829	11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거래사례 선정

가. 선정기준

토지만의 거래사례이거나 토지만의 거래가액이 분리 가능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로서, 인근지역 내의 거래사례 중 용도지역, 실제이용상황, 공법상제한,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나. 인근 거래사례의 현황

기호	소재지 (창원시)	면적 (㎡)	지목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거래가액 (원)	거래시점	비고
#A	의창구 북면 신촌리 ****	407	전	자연녹지 (과수원)	159,705	65,000,000	2021.09.08	-

다. 비교 거래사례 선정 이유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A를 선정하였습니다.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1.000)

3. 시점수정

기 간	변동률 (%)	비고
2021.09.08 ~ 2026.01.28	12.702% (1.12702)	거래사례 #A 자연녹지지역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지역요인

평가대상토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내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

5. 개별요인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통풍, 토양 · 토질의 양부, 관개 · 배수의 양부
획지조건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대상토지/ 거래사례)

기호	거래사례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	#A	0.78	1.00	1.00	1.00	0.85	0.663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기타조건(제외수목 소재)에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159,705	1.000	1.12702	1.000	0.663	119,334	119,000

7. 토지의 시산가액 검토 및 결정

가.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111,000	119,000

나. 토지 시산가액 검토 및 결정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목적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원/㎡)
1	11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구분	기호	면적 (㎡)	결정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1	30.0287	111,000	3,333,186	지분 (643x109/2334)
감정평가액		-	-	3,333,186	-

2. 결정의견

상기 감정평가사례와 인근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제반 법령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 하 여 백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소재 '아랫산두골'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과수원,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대상토지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지세

부정형 평지의 토지입니다.

4. 이용상황

과수원으로 이용중입니다.

5. 접면도로상황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8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입니다.

7. 제시목록외의 물건

제시외수목(감나무)이 소재합니다.

8.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9.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① 대상토지는 공유지분에 대한 감정평가건입니다.

② 대상토지 남동측 경계부분에 전신주가 소재하나,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합니다.

위 치 도



범 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3층이상
		현황도로		평가건물 1층		제시외건물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2층		평가제외건물





(1)



()

회보서

우)5138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중앙로 47 타워동 5층
503호(중동,어반브릭스)
E-Mail : 2071ms@daum.net

TEL. 055-294-6200
FAX. 0505-182-3580

문서번호 : 2026-01-006

시행일자 : 2026-02-04

수 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참 조 :

제 목 : 감 정 의 회 에 대 한 회 보

선결			지		
접	일자		시		
수	시간		결		
	번호		재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1. 저희 문성감정평가사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01.23자 귀 제 『2025-16654-A01』 호로 의뢰하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945 소재 부동산 (2025-16654-A01)』 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 부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문성감정평가사사무소

수수료 청구서

(전화: 055-294-6200, FAX: 0505-182-3580)

문서번호 : 2026-01-006

수 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6.01.23 자 귀 제 『 2025-16654-A01 』 호로

의뢰하신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945 』 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내 역

과 목		금 액	비 고
평 가 수 수 료		200,000	기본수수료 ≒200,000
실	여 비	40,0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2,000	
	기타 실비	4,000	
비	소 계	46,000	
특 별 용 역 비		—	
공 급 가 액		246,000	1,000원 미만 절사
부 가 세		24,600	
합 계		270,6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270,600	

불 임 : 감정평가서 1 부

※ 송 금 처 ※

농협은행 : 301-3834-0591-01(예금주:이영기(문성감정평가사무소))

문성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 이 영 기